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외장
람	

제1361호 2018. 5. 28(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8호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소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 ----- 2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6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4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3-70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1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28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5.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 오류동 오류지구45블록 1로트 외 9 필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2. 사업주체 : 우방산업(주) 대표 강필수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오류지구45블록 1로트 외 9 필지
 - 나. 대지면적 : 16,314.2㎡
 - 다. 사업규모 : 연면적 55,470.336㎡(지하 2층, 지상 18층)
 - 라. 용도 : 공동주택 8개동(아파트 4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인천광역시서구청 고시 제2018-68호

인천도시계획시설(시설:소공원) 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청 고시 제2017-29호(2017. 3. 13.)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도시계획시설 【시설: 소공원, 사업명: 신진말소공원 조성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5.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3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원(소공원)]
 - 명칭 : 신진말소공원 조성공사
3. 사업의 규모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①	소공원	서구 가좌동 556-33	856	2017.3.13.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코스모화학(주) 함재경
- 주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55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공부	편입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가좌동	556-33	공장용지	856.0	856.0	코스모 화학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원봉로 55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신설	①	신진말소공 원	소공원	가좌동 556-33번지	856	2017.3.13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69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5.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향동로 79 외 1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5. 2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70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중3-701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6-5호(2016.1.11.)로 도시관리계획 결정한 인천 도시계획시설【시설명 : 도로, 사업명 : 심곡동 심곡로 188번길(중3-701호선) 도로확장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작성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 및 건설과(☎560-452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5.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산142-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중3-701호선)
 - 명칭 : 심곡동 심곡로 188번길 도로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변경없음) : L=293m, B=8~12m, A=3,233m²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701	8~12	국지 도로	293	공촌동 275-6	중로2-39	일반 도로	공촌 동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있음)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17.12.30.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8. 6.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서구 공촌동]

연번	지 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소 유 자	
1	산142-7	임	71	2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2	산142-5	임	409	65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3	산142-6	임	617	140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4	산141-7	임	468	38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5	산141-3	임	2,858	383	국(산림청)	산림청
6	278-7	전	343	25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7	278-1	전	358	266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8	278-3	전	208	3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9	산141-6	임	375	34	국(산림청)	산림청
10	산141-9	임	27	1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11	산140-7	임	27	10	인천광역시서구	건설과
소 계			5,761	96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중로	3	701	8~12	국지 도로	293	공촌동 275-6	중로2-39	일반 도로	공촌 동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79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5.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18. 4.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명칭 및 직제가 변경(문화복지국 인재육성과 → 아동친화정책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개편된 명칭과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아동친화정책관, 전화 560-5892, 팩스 560-27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8. 4.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명칭 및 직제가 변경(문화복지국 인재육성과 → 아동친화정책관)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 「청소년 육성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개편된 명칭과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위원의 해촉)”을 “(위원의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인재육성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구성) ① (생 략)</p> <p>② 위원장은 <u>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u>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p> <p>③ (생 략)</p>	<p>제2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부구청장</u>-----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u>각호</u>의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u>해촉</u>할 수 있다.</p> <p>1. 삭 제</p> <p>2.3. (생 략)</p>	<p>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p> <p>- <u>각 호</u>----- -----</p> <p>- <u>위촉 해제</u>-----.</p> <p>2.3. (현행과 같음)</p>
<p>제9조(간사와 서기) ① (생 략)</p> <p>② 위원회의 간사는 <u>인재육성과장</u>이 되며 서기는 <u>청소년담당</u>이 된다.</p> <p>③ (생 략)</p>	<p>제9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청소년업무 담당 부서</u>의 장----- -----.</p> <p>③ (현행과 같음)</p>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794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 5.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18. 4.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명칭 및 직제가 변경(문화복지국 인재육성과 → 아동친화정책관)

2. 주요내용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개편된 명칭과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아동친화정책관, 전화 560-5892, 팩스 560-27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8. 4. 1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 업무 담당부서의 명칭 및 직제가 변경(문화복지국 인재육성과 → 아동친화정책관)

2. 주요내용

-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개편된 명칭과 직제에 부합하도록 개정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국장”을 “부구청장”으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 ~ ⑧ (생략)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

⑤ ~ ⑧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8-795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5.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및 오타수정

2. 주요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제한자 중 “정신질환자” 삭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아동친화정책관, 전화 560-5892, 팩스 560-274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의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토록 권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정비 및 오타수정

2. 주요내용

-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 제한자 중 “정신질환자” 삭제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청소년단체”라 함은”을 ““청소년단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단체”라 함은”을 ““단체”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정신질환 또는 전염성”을 “전염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단서 중 “사용당일에”를 “사용하는 날에”로 하고, “당일”을 “그날”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녹생성장”을 “녹색성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당월”을 “그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p> <p>2. "<u>청소년단체</u>"라 함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p> <p>3. "<u>수련시설</u>"이라 함은 청소년을 주 이용대상으로 청소년의 심신수양,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춘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 및 이용시설을 말한다.</p>	<p>제3조(정의) ----- ----- <u>뜻</u>은 ----- --.</p> <p>1. ----- <u>이란</u> ----- ----- -----.</p> <p>2. "<u>청소년단체</u>"란 ----- ----- ----- -----.</p> <p>3. ----- <u>이란</u> ----- ----- ----- ----- ----- ----- ----- ----- -----.</p>

략)

③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이 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한다.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 6. (생략)

②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을 취소요청한 때에는 전액반환하고, 강의 개시 후 취소요청한 때에는 당월까지의 수강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료를 반환한다. 다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12.17.)

행과 같음)

③ ----- 녹색성장 -----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

-----.

1. ----- 밖에 -----

2. ~ 6. (현행과 같음)

② -----

----- 그
달-----

관계 법령 발취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장애인에게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별지1> 기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은,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바란다.
2.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기 바란다.

이 유

1. 권고의 배경



광역시	기초	조례명	해당조문
전북도	전북도	97.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고창군	98. 고창군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김제시	99. 김제시문화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	제6조
	무주군	100. 무주군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부안군	101. 부안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
	완주군	102.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8조
	익산시	103.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	제8조
		104. 익산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제8조
	임실군	105. 임실군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제14조
	장수군	106. 장수군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
	정읍시	107. 정읍시문화의집관리운영조례	제16조
진안군	108.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109. 진안군청소년수련시설운영관리조례	제11조	
부산시	강서구	110. 부산광역시강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의2
		111. 부산광역시강서구사회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제4조
	기장군	112. 부산광역시기장군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6조
	동구	113. 부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7조
중구	114. 부산광역시중구복지관관리및운영조례	제4조	
대구시	남구	115. 대구광역시남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달서구	116.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117. 대구광역시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동구	118. 대구광역시동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북구	119. 대구광역시북구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서구	120. 대구광역시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	제5조
		121. 대구광역시서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122. 대구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	제15조
		123. 대구광역시서구문화회관운영및사용조례	제26조
수성구	124. 대구광역시수성구청소년수련시설및운영조례	제18조	
중구	125. 대구광역시중구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인천시	남구	126. 인천광역시남구노인인력개발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9조
	서구	127. 인천광역시서구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광주시	서구	128. 광주광역시서구청소년문화의집관리및운영조례	제10조



위 정본입니다.

2018. 1. 26.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의사담당 최 환 석 (인)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7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8. 5.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업무추진 우수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로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 제12항)
 -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
 -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 알기 쉬운 법령용어 및 띄어쓰기 등 재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06. 1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093,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업무추진 우수자 등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로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2. 주요내용

- 특별휴가 조항 신설(안 제23조 제12항)
 -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
 -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0호 중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 “별표 3 ” ”을 ”별표 3”으로 한다.

제23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⑫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공적인 업무 수행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파견근무) ①~② (생략)</p> <p>③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u>구청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관을 위탁하여야 한다.</u></p>	<p>제10조(파견근무) 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 ----- ----- -----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u>----- ----- -----.</p>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 9. (생략)</p> <p>10. 「<u>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u>」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을 위해 참석하는 때</p>	<p>제22조(공가) ----- ----- ----- ----- -----.</p> <p>1. ~ 9. (현행과 같음)</p> <p>10. 「<u>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u>」 제9조 -- ----- ----- -----</p>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
 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
 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 ⑪ (생략)

<신설>

제23조(특별휴가) ①-----

 ----- 별표 3 -----

 -----.

② ~ ⑪ (현행과 같음)

⑫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
 공적인 업무 수행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특
 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
 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